

 <p><b>정치하는엄마들</b> www.politicalmamas.kr</p>	<b>보도자료</b>		
	보도일시	2019. 07. 04. 목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서성민 활동가/법률대리인	010-7251-6063
	배포일시	2019. 07. 04.	총 7매 (별첨 0건)

**서울시 상대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사건,  
 서울시도 법적책임 있다!”**

- 일시 : 2019년 7월 4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1. 강미정 활동가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사망사고 연대 취지)
  2. 고유미 님 (하준이 엄마)
  3. 서성민 활동가 (법률대리인, 민사소송 취지)
  4. 현장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하준이 엄마 고유미 님 발언문>

저는 하준이 엄마입니다.

하준이는 2017년 서울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서울랜드 동문 주차장에서 제동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이 내려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어린이 시설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서울시와 서울랜드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국민청원 이후 정부의 대책발표만 믿고 기다렸는데 바뀐 것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서울시와 서울랜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스탑퍼만 있었어도, 차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내려오는 동안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라도 한번 불었으면 제 아들은 살아 있었을 겁니다.

언덕에 줄만 긋지 말고 안전대책을 세웠어야죠. 그게 아니면 사망사건이 있었으면 이제라도 바꿨어야죠.

서울시에 주차장 대책을 수차례 물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축제에는 수십억씩 쓰면서 왜 안전에 대한 투자는 아깝습니까?

누가 이런 사고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도 굴러내려 올라와 피하고 살아야하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개인이라 입 다물고 살 거라고 생각했나요?

서울시와 서울랜드가 최소한의 변화라도 보였으면 저는 다시 뛰쳐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1년이 넘도록 기다렸으나 다시 가 본 사고현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것만으로도 숨 쉬고 살기도 힘든데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서울시와 서울랜드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다시 또 시작해야 합니다.

통과된 도로교통법은 하준이법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주차장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로 다른 아이는 보내지 않겠다고, 아들과 한 약속 반드시 지킬 겁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메모일시	2018. 4. 9.(월) / 총 6매(본문 6)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과장 이성훈, 사무관 김정환 ☎ (044)201-3814
	도로정책과	담당자	·과장 이용욱, 사무관 서지웅 ☎ (044)201-3887
	도로운영과	담당자	·과장 이정기, 사무관 이국원, 주무관 오선녀 ☎ (044)201-3917, 3914
	경찰청 교통안전과	담당자	·과장 홍완선, 경감 고수철, ☎ (02)3150-2852
보도일시		2018년 4월 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8.(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 하준이법 관련 국민청원 후속조치 -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연내 시행키로**  
**국민청원 후속조치 일환...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등 안전대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 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2018. 4.

국토교통부 · 경찰청

# 현수막 7개가 재발방지대책인가? 서울시는 지금 당장 대답하라!

2017년 10월 1일 오전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굴러내려 와 4살 최하준 어린이와 동생을 임신 중이던 엄마 고유미 님을 덮쳤다. 그 날 4살 하준이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동생들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하준이를 보낸 지 한 달 만인 11월 6일, 하준이 엄마는 재발방지를 위한 청와대 청원(이하 하준이법 청원)을 제기했고, 한 달 간 14만6천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뜻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하는 20만 명에는 못 미쳤지만, 2018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 ‘경사진 곳에 주차 시 고임목 설치 또는 조향장치(핸들)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리는 등 운전자의 안전주차 의무를 신설’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미 통과된 상황이었으나 민홍철, 박영선,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상기 개정안은 결코 하준이법이라 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가 이용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의 종단경사도(자동차의 진행방향의 기울기)는 단 2.0%에 불과하다. 이는 경사각 도로 환산 시 1.15° 에 불과한 수치로서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은 운전자가 육안으로 경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장소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원인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핵심과제인 것이다.

2018년 1월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보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경사진 곳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시군구청장은 주의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설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하준이법에 근접해있다. 국토부는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에서 위 주차장법 개정안을 18년 5월까지 개정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 이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하준이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주차장에 주의표지판을 설치하는 지극히 단순한 법안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에 진절머리가 난다.

## 1. 경사진 주차장 교통안전 확보

- (안전주차 의무 부과)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안전주차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된다.
  -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방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 (17. 2) 민홍철 의원, (17. 11.) 신창현 의원, (17. 12.)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제동장치, 고임목 을 이용한 주차 주의의무와 처벌 근거를 둔 「주차장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규칙도 금년 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 (18. 1)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8. 3) 상임위 통과→(18. 5) 개정 완료 예정
- (안내표지판 설치)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운전자 주의의무 외에도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의 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주의표지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나. 주차장 안전시설 개선

- 주차장 내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주차주의 안내문 부착, 안전시설 개선 등 신속한 안전대책 시행(국토부)
  - 경사진 곳의 주차장 관리자는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주차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
  - 주차장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지자체 합동안전점검 행정명령 시도,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검토
    - \* (先시행 및 後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행정지시를 통해 시급한 시설부터 개선에 착수하고,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 마련
- 경사로 인한 미끄럼 사고 우려가 있는 구역에 주차안내 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이행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마련(국토부)
  - 시장·군수는 안내표지가 미설치된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명령 시도	안전점검 요청 및 관리대책 마련	점검·조치결과 보고	개선확인
국토부 → 지자체	지자체 → 대상 시설물 소유주, 관리자	대상 시설물 → 지자체	지자체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주차장 내 경사로 인한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주차안내 표지 설치 의무화 ○ 지자체장은 주차안내표지 설치 의무 미이행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차장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함
○ <신 설>	○ 안내표지 설치 미이행시 지자체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국토부의 공수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토부는 분명 ‘先시행 및 後제도개선 추진’ 이라 밝혔고 지자체 행정지시를 통해 시급한 시설부터 개선에 착수하고 추후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도 경사진 주차장에는 주의 표지는 물론 고정식 고임목(스토퍼)와 같은 안전시설이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지자체 합동안전점검, 주의 표지 미설치 시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등 2018년 4월에 국토부가 밝힌 후속대책 중 실행에 옮긴 조치는 단 하나도 없다. 국토부가 밝힌 장밋빛 허구는 누굴 위한 것이었나? 하준이 엄마가 품었던 기대와 한없는 절망에 대해 국토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단지 수십만의 청원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잠시 피하기 위해, 정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하고 하준이 엄마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말인가?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개선을 우선 추진한다더니, 올해 2월 고유미 님이 다시 찾은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은 사고가 발생한 2017년 10월과 달라진 게 거의 없었다. 16,000㎡(4,840평) 규모에 주차대수가 762면에 달하는 동문주차장에 현수막 7개, 입간판 4개, 배너 4개를 단다고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하준이 엄마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바라던 고정식 스토퍼는커녕 주차구획선도 희미해서 제대로 분간되지 않을 지경이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급한 시설부터 시설개선에 착수한다더니, 사고현장인 서울시 소유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도 손대지 않았다. 설마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물리겠다는 시설이 현수막, 입간판, 배너 몇 개였단 말인가?

고유미 님은 말한다. 서울시와 서울랜드가 최소한의 변화라도 보였으면 다시 뛰쳐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1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사고현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서 몇 시간을 울고 일어서서 하준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엄마는 다시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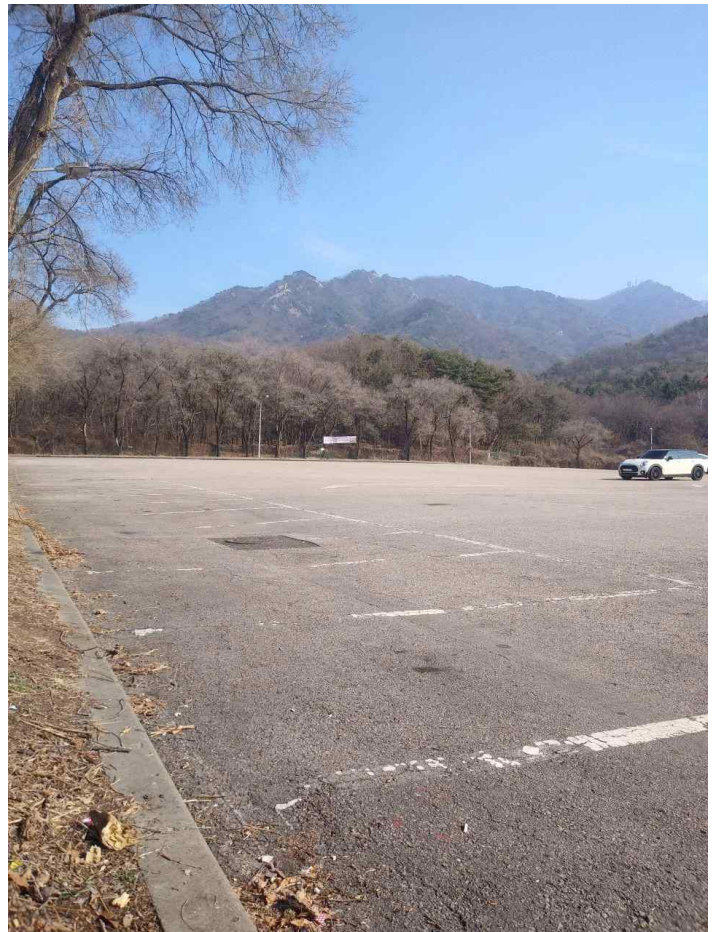
### 3. 주차장법 개정 전 안전조치 내역

#### □ 주차장 평탄화 작업 등에 대한 견해

- 사고발생 이후 주차방법 개선 등 사고예방을 위해 검토하였으나, 동문주차장은 동서방향의 경사도가 2.5%, 남북방향의 경사도가 2%로 주차장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상하로 경사져 있어 주차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고,
- 미끄럼 방지목을 설치할 경우 대형버스는 주차 및 통행할 수 없고, 승용차의 주차면수도 50%(762대 → 380대) 감소하여 미끄럼 방지목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주차장 평탄화 사업은 약 5~6억원 사업비가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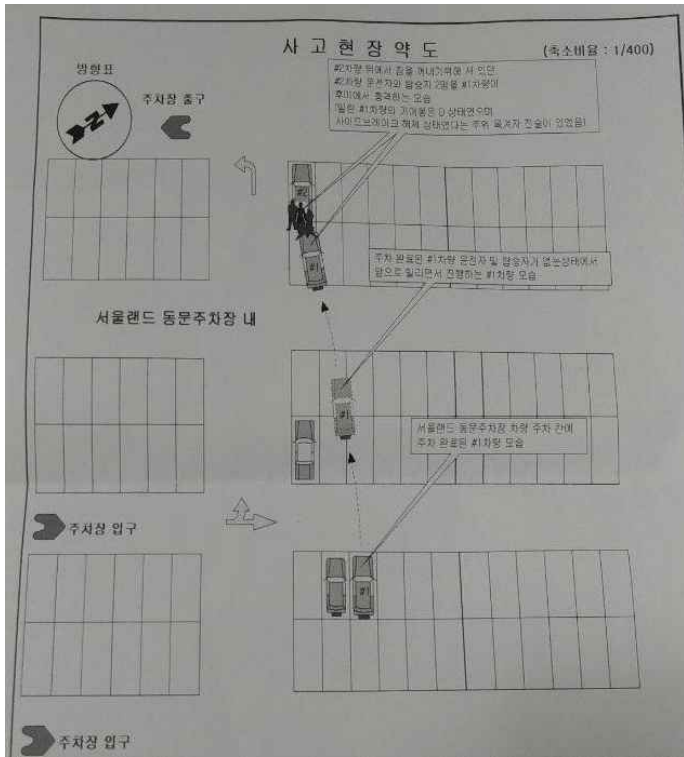
#### □ 개선대책 현황

- 서울랜드 주차장에 올바른 주차안내 현수막 3개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임시 입간판 4개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2018년 봄 성수기를 맞아 배너 4개, 현수막 4개를 추가 제작하여 설치하였음.
-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고임목 비치 및 이용객 주차안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제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만 보더라도 스토퍼 설치만이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고정식 고임목(스토퍼, 미끄럼 방지목)을 설치할 경우 대형버스 주차 및 통행이 불가하고, 승용차 주차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케

변을 늘어놓고 있다. 주차장 일부를 대형버스 전용 주차구역으로 하고 나머지를 승용차 구역으로 지정하면 버스 통행이 불가능할 리가 없다. 서울랜드는 매년 약 2백만명이 이용하고 그 중 소인이 5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 시설인데 사망사고 이후 현수막을 10개도 안 달고 조치를 다했다니, 이용객을 돈으로만 본다는 비판이 결코 과하지 않다. 서울시는 4월 9일에 제출한 문서에서 평탄화 작업에 5~6억이 소요되니 일단 현수막 3개를 달았다고 하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공사비를 24억이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왔다. 시민들이 나서 24억을 모금하면 되겠는가? 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서울시는 현수막 7개를 걸었기 때문에 떳떳하다 주장할 수 있는가? 서울시는 하준이 엄마를 이곳 서울시청 앞까지 오게 만들었다. 이 모두가 서울시의 책임이고, 서울시의 수준이다.



## 2. 최근 5년간 연령대 구간별(소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 이용객 규모

□ 서울랜드 연령대별 이용객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인	청소년	소인	합계
2018년	703,310	117,247	344,090	1,164,647
2017년	1,451,081	142,109	458,569	2,051,759
2016년	1,353,742	181,987	479,371	2,015,100
2015년	1,301,717	188,040	523,333	2,013,090
2014년	1,222,459	190,197	494,074	1,906,730

하준이 엄마는 보험사와 합의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오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서울시와 서울랜드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서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준이와의 굳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부도 국회도 서울시도 책임 있는 자들의 언동은 하나같이 가볍고 무르지만, 엄마의 약속은 산처럼 무겁고 굳건하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하준이를 기억하고 잊지 않을 것이다. 많은 생명이 하준이에게 빛을 지고 감사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하준이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커다란 영광으로 여기며, 하준이 엄마와 끝까지 동행할 것이다.

2019년 7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 <소장 일부>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 피고 서울시의 책임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이 사건 주차장(과천시 막계동 473-1 주식회사 서울랜드의 동문주차장)을 설치하여 점유하는 자이고,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와 서울시는 2015. 3. 경 주식회사 서울랜드가 과천시 광명로 181 등에 위치한 피고 주

식회사 서울랜드 소유의 시설물 및 부속물에 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모든 시설물을 피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서울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외 모든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의 부동산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시가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고 해도, 피고 서울시가 여전히 이 사건 주차장의 법적인 관리 및 유지의 책임자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기존의 일반적 관리의무에 더하여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가 점유자로서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용수익함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까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가 점유하는 피고 서울시 소유의 재산이자 공공의 영조물로서,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서울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와 피고 서울시의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피고 서울시는 경사면 주차가 가능한 이 사건 주차장에 경사면 주차대상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 등의 기본적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매년 약 200만명의 이용객이 찾는 놀이공원의 일부 시설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와 피고 서울시는 위 놀이공원 부지와 시설물 등의 설치자, 점유자(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 소유자이자, 관리자(피고 서울시)로서 수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이 사건 주차장 내에 경사면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주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고임목, 스토퍼 등의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차량의 시동을 끄고, 기어를 주차상태로 놓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경사진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비단 운전자에게만 요구되는 의무가 아니라, 수많은 차량이 모여드는 주차장에서 경사면 주차를 허용하도록 한 주차장의 설치자, 점유자,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며, 이미,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기어를 주차모드로 두더라도, 브레이크 케이블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노후차량 등의 풀림현상들로 인하여 수차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놀이공원의 설치자이자 점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 그리고 피고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로서는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이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는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와 피고 서울시는 그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현재에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와 피고 서울시는 경사면 주차가 가능한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경사면 주차시 주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경사면 주차시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알리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최소한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와 피고 서울시는 수많은 이용객들로 붐비는 이 사건 주차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는 바, 만일,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현장에 있었다면, 운전자의 차량이 원고들에게 굴러가 충격하기 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안전요원이 원고들 인근에 있지 않고 다소 거리를 두고 있었다더라도 사고발생에 임박하여 호각 등의 신호를 이용해 위험성을 전파하였다면, 성인인 원고 고유미, 최우주가 미리 사고를 방지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와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주차장에서 경사면 주차대상 차량에 대한 주차모드, 사이드브레이크 작동 안내 등을 하지 않았는 바, 만일 피고 서울시가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들을 알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현재에도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이에 관한 실태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갑 제9호증 최근의 실태에 대한 언론보도]

### (3) 소결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서울랜드와 피고 서울시는 수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주자 및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하거나, 경사면 주차에 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통상의 안정성을 결여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